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마련을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필기시험 대체 과목 유효기간을 확대 또는 폐지하여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시험에서의 소방경·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에 관한 시험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안 제34조)

시험의 공고 및 시행,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나.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50조의 2)

시험관리관, 시험편집요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함.

다.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안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합격 취소 및 불공정 채용의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라.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과정 점검(안 제52조)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마.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인정 기간 변경(안 별표 6, 9)

채용시험의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확대 또는 폐지
함으로써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함.

바. 영어능력검정시험 소방경·위 기준점수 상향(안 별표 6)

채용시험에서 소방경·위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국가공무원 5·7급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
게 채용요건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및 시행,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두어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 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시험실시결과보고)”를 “(시험실시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별표 6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별표 6 비교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9 비교 전단 중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
정(소방경·소방위에 대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로 한정한다)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시험실시권)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4조(시험실시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의 공고 및 시행,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두어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u>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 ④ (생략) <u>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신 설></u>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u>

<신 설>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신 설>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2조(시험실시결과보고)
략)

(생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2조(시험실시결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험실시권자는 법 제7조제2
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
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88